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류명기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97
------	------

발의일자 : 2021. 5. 28.

발 의 자 : 류명기 의원

찬 성 자 : 김용술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사전점검 대상시설(안 제4조)
- 다. 시설주, 점검요원의 의무 규정(안 제5조~제7조)
- 라. 편의시설의 점검시기 및 점검결과의 보고·반영(안 제8조~제9조)
- 마.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신청(안 제10조~제11조)
- 바. 업무의 위탁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대상시설 외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전점검”이란 편의시설의 사용승인을 위해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점검시기)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상시설 외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①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정명령)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		면적	
	구분	임대, 자가		기타사항
시설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지원 시설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